

- ▶ 2026년 1월 1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지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 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세요?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검색창에 '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를 검색해보세요.

※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에서는 나의 민원행정보조회 민원서비스 지원내용 등도 확인할수 있습니다.(로그인 필요)



보훈가족 심리재활 상담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 02-2225-2550

- 부산 : ☎ 051-601-6762~3
- 대전 : ☎ 042-605-0732~3
- 대구 : ☎ 053-630-7127~8
- 광주 : ☎ 062-602-6615~6
- 인천 : ☎ 032-363-9893~4

국가보훈대상자 무료법률구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수권 유족(보훈보상대상, 지원대상 포함)에게 무료로 민·가사, 형사, 행정소송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

1:1 보훈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전국 어디서나

1577-0606

대부금 상황, 잔액 등이 궁금하시다면?

전국 어디서나

1577-0301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화번호는? **02-782-2046**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전화번호는? **02-782-2862**

보훈단체에 가입하시면 '회원 간 유대관계 형성', '보훈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제도 안내', '보훈행사 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www.donate.bohun.or.kr)

후원하신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 됩니다.

<p>자립기반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 교육, 재해복구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p>	<p>예우문화 국가유공자들의 헌신·희생에 감사와 보답을 전하는 예우문화를 만듭니다.</p>	<p>노후복지 나이가 많으신 국가유공자 등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습니다.</p>	<p>의료재활 중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월체어 등 보조기를 지원하고, 가족상실 충격 등 심리재활을 지원합니다.</p>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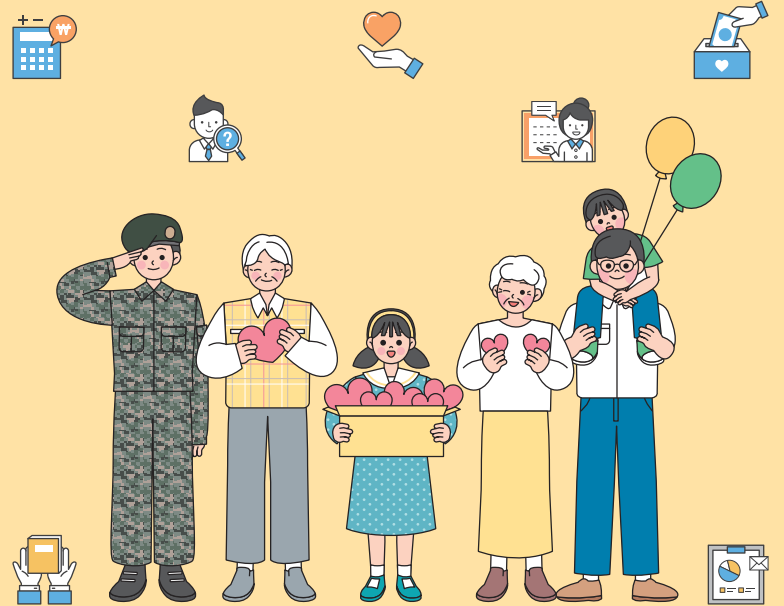
「모두의 보훈 드림」 홈페이지 QR코드

QR코드를 사용하시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기부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6 보훈가족을 위한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보훈제도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희생이 존경으로, 예우가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보훈급여금 지급** 04
 매월 15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교육지원** 06
 수업료,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취업지원** 08
 가점 부여, 취업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 의료지원** 10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등을 지원합니다.
- 대부지원** 12
 아파트 특별공급 및 주택·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를 지원합니다.
- 복지지원** 14
 안락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급여,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 기타지원** 16
 국·공립공원 입장료 면제, 병역혜택 등을 지원합니다.
- 사망시 예우** 18
 국립묘지 이장, 사망일시금 등을 지원합니다.

※ 차량지원, 교통시설 이용지원, 보철구 지급은 전·공상군경 등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됩니다.

유족 보호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 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보상금 지급대상은?**

- 유족 보상금은 ① 배우자 ② 자녀(25세 미만)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으로 승계
- ※ 25세 이상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 비대상임

▶ **보상금 월 지급액은? (2026년도)**

(단위 : 원)

		일반	60세 이상	무의탁
배우자	전몰·순직	2,138,000	2,287,000	2,412,000
	상이1~5급, 6급 상이사망	1,853,000	2,002,000	2,127,000
	6급 비상이, 7급 상이사망	680,000	829,000	954,000
부모	전몰·순직	2,101,000	2,198,000	2,375,000
	상이1~5급, 6급 상이사망	1,824,000	1,921,000	2,098,000
	6급 비상이, 7급 상이사망	645,000	742,000	919,000
자녀 (25세 미만, 장애)	전몰·순직	상이1~5급, 6급 상이사망	6급 비상이, 7급 상이사망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2,479,000	2,153,000	982,000	1인 양육 100,000 2인 양육 370,000 (1인 추가 시 370,000 가산)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000 2인 양육 185,000 (1인 추가 시 185,000 가산)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제적 자녀 1,779,000 (제적 위로가산금 80,000 추가) 승계 자녀 1,513,000 신규 승계 자녀 657,000 (생계관련시 114,000 가산)	
2인 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274,000 (1인 추가 시 274,000 가산)	독자사망 수당	부모 274,000 (전몰순직군경 유족만)	
무의탁 부모부양수당	배우자 149,000	생활조정 수당	가구원 3인 이하 242,000~311,000 가구원 4인 이상 300,000~370,000	

- 무의탁 수당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합니다.(2012. 7. 1. 이전 등록자에 한함)
- ※ 수권 유족이 '부모'인 경우는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손자녀(직계비속)까지 모두 없는 경우
- ※ 수권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는 55세 이상이면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 조사 후 매월 15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은 과거 보훈제도의 미비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였거나 수혜가 적었던 6.25전몰군경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호급여금입니다.

- 지급대상은?

- 1954. 10. 25. 이전(1950. 6. 25.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 10. 25.~1955. 3. 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6.30.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 또는 순직한 자의 자녀(현재 보상금을 지급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적 자녀 : 보훈청 등록 후 성년 도달 등으로 제적되었다가 법률 개정으로 재등록된 자녀
- 승계 자녀 : 모 또는 조부모 등이 보상금을 수령하다 1997. 12. 31. 이전에 순위변경된 자녀
- 신규 승계 자녀 : 1998. 1. 1 이후 모 또는 조부모 등이 보상금을 수령 후 순위변경된 자녀
- 지급순서 : 동순위 자녀 중 협의로 지정된 자 >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 분할지급
- ※ 협의가 된 이후에 협의 당사자인 자녀 중 1인이 분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협의 효력 상실, 분할지급
- ※ 분할하여 지급받던 자녀가 사망 등으로 제적된 경우 지급받던 금액은, 남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할

▶ **2012. 7. 10이후 신규 등록 유가족의 보상금 월 지급액은?**

(단위 : 원)

	배우자	부모 (조부모)	25세 미만 자녀 (미성년 제매)
전몰·순직군경 유족	2,138,000	2,101,000	2,479,000
1~5급 전공상군경 유족	1,853,000	1,824,000	2,153,000
6급 전공상군경 유족	680,000	645,000	982,000

부양가족수당	미성년자녀 1명당 10만원, 미성년 제매 1명당 20만원
2인 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274,000(1인 추가 시 274,000 가산)
고령수당 (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또는 2인 이상 사망수당을 받지 않는 분 배우자 149,000/부모·조부모 97,000

*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고령수당으로 지급, 생활 곤란시 생활조정수당 가산

▶ **보상금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은데...**

- 보상금을 받고 계신 분이 신분증을 지참,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변경통장으로 입금
- 보호급여금 압류 방지 전용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안내
 - (발급가능 금융기관) 10개 은행(우체국,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한은행, 대구은행)에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발급)을 제시하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 개설 후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예금계좌 지정 또는 변경 신청
 - 단, 잘못 지급된 보호급여금 등을 국가보훈부에서 환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압류 가능

▶ **지자체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려면 - 수권 유족**

- 보훈예우수당이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금액 및 지급범위는 해당 지자체 문의

자녀, 전몰·순직군경 배우자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 '12. 7. 1.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95. 1. 1. 이후 출생자)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 ▶ '12. 7. 1. 이후 등록자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생활수준조사필요
-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생활수준조사 생략

▶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
- 가족 추가,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전학)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 증명서 발급 : 가까운 보훈청 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
 - 재학 중 신규로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었을 경우에도 절차 동일
- 학습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연간 지급액 : 중학교 124,000원, 고등학교 144,000원(인문계), 186,000원(전문계)
 - 지급시기 : 4월15일, 10월15일에 나누어 지급
 -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됩니다.

▶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일반대학 미실시)
 - 가까운 보훈청에서 '대학입학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첨부
 -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 대학별 특별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세요.
- 합격하셨다면,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 가까운 보훈청 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
 - 재학 중 신규로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었을 경우에도 절차 동일
- 등록금(수업료)이 면제됩니다.
 - 일반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면제기간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5년제 대학	6년제 대학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 수업연한이 없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의 면제학점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면제학점	84학점 이하	126학점 이하	168학점 이하

※ 전몰·순직군경 배우자는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 성적 등의 제한없음
(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입학학기 제외)만 면제)

○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 학습보조비는 전몰·순직군경 배우자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며, 연간 236,000원을 2회(4월 15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
- ※ 학습보조비의 경우 지급기간에 따른 제한 있음(보훈관서 문의)

▶ 특수교육을 받고 있어요

- 관할 보훈청에 재학증명서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유치원 과정부터 학습보조비 지급(4월 15일, 10월 15일)
 - ※ 연간 지급액 : 유치원·초등학교 534,000원 / 중·고등학교 718,000원
 - ※ 특수교육대상자 외에는 중학교부터 교육지원이 실시됩니다

▶ 장학금은 없나요?

- 특수학교(300,000원) 및 전몰·순직군경 배우자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35세 미만 자녀 대학원(최고 1,300,000원) 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신청 시기 : 4월초 및 9월초 한달간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또는 보훈청 문의

▶ 6·25전몰군경 손자녀도 대학교 장학금이 있다는데...

- 신청자격 : 6·25전몰군경의 손자녀로서 대학재학자
 - 대학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신청시기 : 4월초 및 9월초 한달간
- 지원금액 : 일반대(전문대 포함) 최고 100만원(본인 실납부액 범위)
- 구비서류 : 보훈가족장학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자세한 문의는 취학 관할 보훈관서에서 상담 후 접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 ▶ '12. 7. 1. 이후 신규 등록 한 7급 전·공상군경의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
- ▶ '12. 7. 1. 이후 신규 등록 유가족은 자녀 1인에 한하며, 취업알선도 1인 3회로 제한(가점 지원은 제한 없음)

▶ 채용시험 시 가산점(10% 또는 5%)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읍·면·동주민 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업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 : 원서접수 시 첨부
 - 6급 이하 공무원 등 시험 : 답안지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표기란에 표시, 합격자 발표 후 제출(반드시 채용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
- 가점 : 전몰·순직군경 유족 10%, 전공상군경 유족 및 지정취업 대상자 5%

▶ 취업이 어려우시다면...

- 이력서(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1통, 취업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
- 취업희망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으로 신청 가능
 -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
 - ※ 자녀는 39세까지 신청 가능
 - 운전직·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 채용 시 추천

▶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

-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 :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
 - ※ 우선선발 모집 정원 및 선발 방법은 개별 모집 공고 확인 필
-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시면, 월 4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 관할 보훈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확인하여 매 분기 말 교육훈련 받는 분의 은행계좌로 입금
 - ※ 기능대학의 학위과정 수료자 및 140시간(주20시간) 미만 과정 수료자는 지급대상 아님
 - ※ 법정취업자의 경우 지원 불가
 - ※ 지원 횟수 3회 (동일 과정 및 과목 지원 불가)

▶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https://job.mpva.go.kr>)에서 취업수강료 (지원과정(목) 및 지정교육기관) 확인 후,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수강 등록 후, 관할 보훈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개인정보사전동의서, 서약서, 영수증'을 먼저 제출하세요.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수강종료일로부터 1년까지는 신청 가능)
- 신청대상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관할 보훈청
 - ※ 타부처(자치단체 포함) 중복지원 불가 (예 : 내일배움카드)
- 학습 진도율 80% 이상(수강기간 2/3 이상) 이수한 후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청구 (구비서류 : 수강완료 사실확인서, 응시확인서류, 지정계좌 신청 및 동의서, 통장 사본)
- 보훈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70%) 입금
 - 1인당 지원한도액 : 유가족 총 1,500,000원 (연간 750,000원)
 - ※ 단, 법정취업자, 수강료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된 수강료 환수 및 지원대상 제외
 - ※ 수강료 외 시험응시(수수)료, 검정(수수)료, 교재비는 미지원
 - ※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과정은 수강료 100% 지원

취업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훈관서 채용정보, 취업수강료 지원, 이력서 작성 기법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사이트 주소 : <https://job.mpva.go.kr>



▶ 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

-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제시(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
 - 보훈부에 등록된 유가족 60% 감면
 - ※ '12.7.1 이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대상 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에 한함
- 보훈병원 주소 및 전화번호
 - 중앙보훈병원 :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02-2225-1114)
 - 부산보훈병원 :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051-601-6000)
 - 광주보훈병원 :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062-602-6114)
 - 대구보훈병원 :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60(☎ 053-630-7000)
 - 대전보훈병원 : 대전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042-939-0114)
 - 인천보훈병원 :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032-363-9800)
 - 중앙보훈병원 서울요양병원 :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02-2225-1123)
 - 부산보훈병원 부산요양병원 :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051-601-8600)
 - 광주보훈병원 광주요양병원 :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062-604-5600)

▶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 받을 수 없나요?

- 대상 :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함)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및 위탁병원 > 위탁병원 명단에서 가까운 위탁병원 확인 후,
-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진료비의 60%를 감면해 드립니다.(비급여, 약제비 본인 부담)
 - 지원 범위 : 건강보험 급여부분

▶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감면해드려요

- 국가유공자 유가족이 보건소 진료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어요 - 수권 유족

- 생활수준조사 결과, 생활이 매우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는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자는 생계곤란 여부, 지침 등에 의거 연중 수시로 선정됩니다.



▶ 아파트 특별공급(분양, 임대)을 받고 싶습니다

- 신청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따라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분
 - 수권 유족
 -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분
 - 신청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은 보존관서에 문의)
 - ※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소지 관할 보존청에 신청하세요
 - 주택우선공급신청서(신청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 1통
 - 개인정보동의서(동의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 1통
 - 추천서약서(서약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 1통
 - 무주택입증서류 : 현주소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전유부)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동거가족 도장
 - ※ 매년 1월 초 접수기간(나라사랑신문 공고 확인 요망) 이후 신청시 순위부 마지막 순서로 배정
 - ※ 전년도 신청자 중 알선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에는?
 - 배점기준(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에 따라 당해년도 우선순위를 결정
 - 국가공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해당 아파트 신청자 중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
 - ※ 특별공급 신청 시 기재하신 휴대폰으로 확보된 주택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 수권 유족

- 전국 국민은행,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창구”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 주택구입(신축)대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는 경우
 - 주택임차대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 가구
 - 주택개량대부 : 신축 5년 이상 경과된 소유주택을 개보수하려는 가구
 - 사업(창업)대부 : 본인, 배우자 또는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 중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구
 - 농토구입대부 :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구입 예정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
 - 생활안정대부 : 생활비,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보철용차량 구입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가구
 - ※ 대부 신청 관련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전국 지점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종류 및 조건

구분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	담보조건
아파트 분양	3,000~6,000만원	연 2.5%	20년균등	분양 아파트 (후취담보시 균인연금, 보훈급여금, 연대보증인·직접대부 시)
주택구입(신축)	3,000~6,000만원	연 2.5%	20년균등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	2,000~4,500만원	연 2.5%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균인연금)
주택개량	800만원	연 3.5%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균인연금)
농토구입	3,000만원	연 2.5%	3년거치 10년균등	구입농토
사업(창업)	2,000만원	연 3.5%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균인연금)
생활안정 (재해로 인한 경우)	300만원 (600만원)	연 2%	3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균인연금)·연대보증인(직접대부 시)

- ※ 보증보험은 위탁은행 대부시에만 담보 가능(위탁은행 문의)
- ※ 보훈급여금(균인연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생활안정대부(한도300만원)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도입(24.1.-) - 국민은행(KB스타뱅킹) 또는 농협은행(NH뱅킹) 앱을 통해 신청

- 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는 관할 보존청에 문의하세요.(예산 범위 내에서 보존청에서 직접 대부 지원)

▶ “나라사랑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 감면이 된다던데...

- 대부받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보훈청 대상자는 관할 보존청)에서 ‘조세면제(감면)증명서’, ‘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
 - 취득세 면제(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 취득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 필요
 - 농토 : 대부금액에 대하여 감면
 -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 대부금액에 대해서만 감면

▶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 관할 보건청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수권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 제외대상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예 :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 대상결정 : 생활수준조사 등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 후, 서비스 지원대상자 결정
 - 서비스지원 :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재가서비스 제공
 - ※ 주1~2회(1회 2시간 서비스 제공)

▶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

- 관할 보건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분)
 - 수권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1~5등급 받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제공받고 있는 분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요양원 입소확인서 또는 요양기관 이용계약서 사본 1부
 - ※ 기타 생활수준조사를 위한 동의서 등 필요
 -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 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
 - 급여부분 본인부담액의 40% 지원(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인 경우 60%)
 -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분부터 지원

▶ 장기요양 필요로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

-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 ※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광주보훈요양원 ☎ 062-602-5800
 - 김해보훈요양원 ☎ 055-340-8585,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0
 -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00, 남양주보훈요양원 ☎ 031-579-7000
 - 원주보훈요양원 ☎ 033-769-2000, 전주보훈요양원 ☎ 063-220-0777
 - 신청대상 : 수권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등급 판정자중 장기요양인 정서 상의 "시설급여" 해당자
 - ※ 주간보호는 "재가급여" 해당자도 가능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급여비 중 급여부분 일부 감면
 - 감면대상 : 배우자 및 유족(부모)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감면율 : 본인 부담액의 40% 감면(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인 경우 60%)
 -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

▶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 보훈원에 '보훈원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유족(자녀 제외)
 -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필요
 - 입소대상 여부는 보훈원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보훈원에 입소하시면, 의식주 제공·의료지원, 사망 시 국립묘지 합장 등 지원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 031-250-1521

▶ 부양할 사람과 집이 없어 복지타운에 입주하고 싶은데...

- 보훈복지타운에 '복지타운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민법상 성인인 수권 유족 중 무주택자로, 일상적인 신분관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독신 또는 부부세대
 - ※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함
 - 입주대상 여부는 복지타운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031-250-1562)
 -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관리
 - 복지타운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 8평형(독신세대)은 보증금 150만원 * 관리비 별도
 - 13평형(부부세대)은 보증금 250만원 * 관리비 별도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 - 수권 유족

- 관할 보훈청 복지과에 재해발생 신고
 - 보훈청에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업무포털'로 피해사실 확인 및 신청자 '재해발생신고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소방서, 경찰서 또는 시·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지급기준 해당여부 확인 후 재해위로금 지급

▶ 보훈후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필요, 협약콘도 및 이용방법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예우보상 > 기타지원 > 협약콘도 이용안내 참조

협약콘도(명)	내용	예약문의
보훈후양원	충주 보훈후양원 연중 이용 가능	☎ 043-854-2121 또는 http://condo.bohun.or.kr
소노호텔&리조트(前 대명)	15개 지역(때밀리 및 스위트 타입) * 비수기 평일 주중(주말, 연휴, 성수기(예약 제외)) * 잔여객실에 한해 협약요금으로 이용 가능	전화(☎ 1588-4888) 또는 홈페이지 https://www.sonohotelsresorts.com * 이용권 번호 객실(롬온리) : 52099159 * 소노라스지역(소노캄비발디/경주, 솔비저남해) 객실(롬온리) 52099324
한화리조트	12개 지역(20평형대 디럭스 타입) * 비수기 평일 주중, 주말(잔여 객실에 한함) * 성수기는 잔여 객실이 있을 경우 이용 가능	홈페이지 예약 www.hanwharesort.co.kr * 고객센터번호 : 11806536
일성리조트	7개 지역(19~40평형대 타입) * 비수기 평일 주중(잔여객실에 한해 협약요금) * 제주비치는 금·일 주말요금 적용 * 부곡은 상시영업이 아니므로 예약가능 여부를 해당 지점에 사전 확인(☎056-536-9870) * 금, 토, 공휴일 전일 예약은 가능하나, 별도 요금 적용 * 자세한 이용사항은 업체 문의	전화예약(☎ 1566-8113) 또는 예약사이트 www.ilsungresort.co.kr * 법인번호 : 62239063
호반호텔앤리조트	3개 지역 * 연중(주말 연휴 제외 / 잔여 객실에 한해 협약요금) * 아일랜드리조트(안면도), 포레스트리움(제천), 레스트리움(제천) 주말, 연휴 예약불가 * 자세한 이용사항 업체 문의	홈페이지 예약(www.resom.co.kr) * 리솜 홈페이지(resom.co.kr) 접속 후 우측상단 회원가입 > 회원정보에서 "MOU" 선택 > 업체 "국가보훈부" 선택 후 인증번호(1400) 입력 > 회원가입 완료 후 "패키지 예약" 진행
청풍리조트	충북 제천 소재(7.9평형 스탠다드 타입) * 비수기 평일 주중, 주말 * 잔여 객실에 한해 협약요금으로 이용 가능 * 성수기, 연휴 등 예약 가능하나, 요금 별도문의	전화예약(☎ 043-640-7000)
주문진리조트	강원 강릉시 주문진 소재(10~19평형대 타입) * 비수기 평일 주중, 주말 * 성수기, 연휴기간은 요금 별도 문의	전화예약(☎ 033-661-7400)

* 예약번호, 고객센터번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반드시 확인요망

▶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개인택시면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공고문 요건에 따라
- 관할 보훈청에서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신청
 -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 발급은 수권 유족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유공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인에게만 발급
 - * 수권자가 부모인 경우 유공자의 제매 포함

▶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 시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수권 유족(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가능)
 - 100% 감면시설 : 고궁 및 능원, 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50% 할인시설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 자녀·형제 중 1인에게 병역혜택이 있습니다 | 보상과

- 대상 : 국가유공자가 전몰군경·순직군인 또는 상이 1~6급 전상군경, 공상 군인인 경우 그 자녀·형제 중 1인(순직경찰, 공상경찰 제외)
- 방법 : 관할 보훈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병무청에 제출
- 병사용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6개월간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근무로 군복무 대체

▶ 국내선항공기 이용요금이 할인됩니다. - 수권 유족

- 항공사 발권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내용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이용요금의 30% (저가항공사 할인율 별도 문의)

▶ 증명발급 수수료 등이 면제됩니다. - 수권 유족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증명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무료발급 항목
 -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 수수료
 - 가족관계증명서,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

▶ 이동전화요금에 할인됩니다. - 수권 유족

- 해당 통신사 지점에 국가보훈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요금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 ※ 통신사에 따라 감면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 문의 후 가입

▶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하고 싶어요

- 선산 등에 안장한 경우 묘비 설치 후 5년 이내 관할 보훈청에 '묘비제작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봉안장·자연장 등 안장시설에 안장한 경우에는 안치 후 5년 이내에 관할 보훈청에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비석 설치 사진(또는 안장시설 안치 사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등의 증빙자료),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은 '안장확인서' 추가로 필요하며 '23.1.1. 이후 사망자부터 지원 가능'
-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기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묘비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에 소요된 실비를 유족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 ※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만 지원

▶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에 신청하세요



①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검색



② 본인인증 후 안장신청 클릭



③ 묘지선택 후 신청

- 국립대전현충원(<http://www.ncms.go.kr>), 국립서울현충원(<http://www.snmb.mil.kr>)
- 신청 후 기다리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장 대상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국립묘지 이장까지 1개월 정도 소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범죄경력 등이 있는 경우 이장이 불가할 수도 있음.
- 국립연천현충원 '27년 준공 예정

▶ 이장대상으로 통보 받으면...

- 이장식 일정을 국립묘지 현충과와 협의하여 정하시고, 구비서류도 함께 문의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가까운 보훈(지)청 보상과에서 화장장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증명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유선 신청 가능)
 - ※ 화장장 감면 유·무 및 감면율은 해당 화장장으로 문의
 - ※ 안장용 영현함은 해당 국립묘지로 문의
- 화장장에 확인원 증명을 제출·화장 하신 후, 국립묘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안장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를 합장하려면...

- 배우자 합장은 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이장 시 동시 합장이 가능하며
 - 유공자가 안장되어 계신 경우에는 해당 국립묘지 현충과에 전화로 신청하시고 안내 받으세요.

·국립대전현충원 (T. 042-820-7051) ·국립서울현충원 (T. 02-826-6238)
 ·국립이천호국원 (T. 031-645-2345) ·국립연천호국원 (T. 054-330-0850)
 ·국립임실호국원 (T. 063-640-6081) ·국립산청호국원 (T. 055-970-0770)
 ·국립괴산호국원 (T. 043-830-1177) ·국립제주호국원 (T. 064-730-8470)

▶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사망 시 반드시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 사망신고(전화)하시면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 승계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권리 승계
- 보훈청에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고 결정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 후 선순위 유족의 사진 1매(3.5X4.5cm,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사진 크기)와 신분증 지참하여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시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권 유족의 장례비도 지원되나요?

- 보상금을 받던 유족이 사망하고,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 6·25자녀 수당 대상자는 제외
 - 지급순위
 - ①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②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이 없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장례 주관자(장례입증 서류제출)
 - 지급금액 : 1,127,000원

꼭! 관할 보훈청에 알려주세요.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부모·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또는 국적 상실, 국적 회복
 - 배우자가 재혼 등으로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인 때
 - 수권 유족의 주소 변경, 영주권 취득

전국 보훈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

기관명	관할 지역	주소·전화번호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6 (02)3785-0815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 서초구 효령로 142 (02)3019-2300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나길 6 (02)944-9260
경기남부보훈지청	수원, 안양, 과천, 안산, 평택, 오산, 의왕, 군포, 시흥, 화성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031)259-1801
인천보훈지청	인천광역시, 부천, 광명, 김포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032)588-4100
경기북부보훈지청	의정부, 동두천, 구리,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연천, 가평, 양평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89 (031)843-5748
경기동부보훈지청	성남, 하남, 광주, 용인, 안성, 이천, 여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대경빌딩 3층(언남동) (031)289-2302
강원서부보훈지청	춘천, 원주, 화천, 양구, 홍천, 인제, 철원, 횡성	강원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033)258-3609
강원동부보훈지청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고성, 양양, 정선, 평창, 영월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310 (033)610-0606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논산, 계룡, 금산, 부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042)280-1114
충남서부보훈지청	보령, 서산, 당진, 태안, 홍성, 예산, 청양, 서천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 (041)630-3700
충남동부보훈지청	세종특별자치시, 천안, 아산, 공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041)589-4900
충북남부보훈지청	청주, 진천, 보은, 영동, 옥천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043)285-3213
충북북부보훈지청	충주, 제천, 단양, 음성, 괴산, 증평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230 (043)841-8800

기관명	관할 지역	주소·전화번호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광역시, 상주, 김천, 구미, 경산, 성주, 칠곡, 고령, 군위, 청도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053)230-6010
경북북부보훈지청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의성, 영양, 청송, 예천	경북 예천군 행복1길 5 (054)650-1400
경북남부보훈지청	경주, 포항, 영천, 영덕, 울진, 울릉	경북 경주시 금성로 355 (054)778-2600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051)469-8991
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 양산	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로 7 (052)228-6500
경남동부보훈지청	김해, 창원, 밀양, 거제, 창녕, 의령, 함안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도로 10 (055)981-5600
경남서부보훈지청	진주, 사천, 통영, 남해, 하동, 고성, 함양, 거창, 합천, 산청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82-5 (055)752-3881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 나주, 담양, 장성, 화순, 강진, 장흥, 해남, 완도	광주 북구 침단과기로208번길 43 (062)975-6500
전남동부보훈지청	순천, 여수, 광양, 곡성, 구례, 보성, 고흥	전남 순천시 팔마2길 7 (061)720-3200
전남서부보훈지청	목포, 무안, 영광, 진도, 함평, 신안, 영암	전남 목포시 관해로 29 (061)273-0093
전북동부보훈지청	전주, 남원,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무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 (063)239-4500
전북서부보훈지청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부안, 고창	전북 익산시 선화로1길 58-5 (063)850-3702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사로 59, 3층 (064)710-8411

